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15호 2017. 4. 14(금)

공고

○남원시 공고 제2017-574호 공시송달공고(2017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1
○남원시 공고 제2017-575호 공시송달공고(2017년 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3
○남원시 공고 제2017-576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공고 제2017-577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남원시 공고 제2017-578호 남원시 시세 징수조례안	32
○남원시 공고 제2017-579호 남원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안	37
○남원시 공고 제2017-580호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남원시 공고 제2017-584호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0
○남원시 공고 제2017-595호 공고(화율~대울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등)	89
○남원시 공고 제2017-600호 남원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6
○남원시 공고 제2017-604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0
○남원시 공고 제2017-611호 공인 등록 공고	119

예규

○남원시 예규 제19호 남원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120
------------------------------------	-----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17 - 574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0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4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7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4. 14 ~ 2017. 4. 28.
3. 납부기한 : 2017. 4. 30
4. 공시송달내용

2017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7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자	납세자 번호	과 세 번 호	세액	송달사유	간주납기
임*호	73****-*****	140001-2017-01-2-***-35	363,260	폐문부재	2017. 4. 30
이*두	79****-*****	140001-2017-01-2-***-23	269,740	폐문부재	2017. 4. 30
이*두	79****-*****	140001-2017-01-2-***-24	1,899,460	폐문부재	2017. 4. 30
주식회사 삼*건*	20****-*****	140003-2017-01-2-***-5	1,293,210	폐문부재	2017. 4. 30

남원시 공고 제2017 - 575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4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7년 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4. 14 ~ 2017. 4. 28.
3. 납부기한 : 2017. 4. 30
4. 공시송달내용

2017년 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7년 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자	납세자 번호	과 세 번 호	세액	송달사유	간주납기
금*조경	21****-*****	140003-2017-03-2-****-16	559,810	수취인미거주	2017. 4. 30
정*경	77****-*****	140002-2017-03-2-****-43	421,360	폐문부재	2017. 4. 30

남원시 공고 제2017-576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 기본법」은 전부개정(2017. 3. 28.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 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세 부과·징수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예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 부과·징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 받은 전라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남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원시(이

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이장·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남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나.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1조”로, 제2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제2항제2호라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8조”로,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제3항 중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라.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② 「남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나.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7-577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송달에 따른 송달부 등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부과회 취소 및 변경, 시세의 환급금의 처리, 지급, 충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8조)

다. 납세담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의견을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063-620-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남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붙여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록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세 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9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시장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시장은 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2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

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나.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② 「남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나.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관련)

○○○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	주 소	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제4조제2항 관련)

○○○ 송달부(교부)									
과세번호 납세자명 출력순번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부세액	우편번호 연락처	주 소	교부장소	수령인			수령 일자	미교부 사유
					성명	납세자 와의 관계	서명		
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3항 관련)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제3항 관련)

년도 기 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송달			공시 송달 일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제5조제1항 관련)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군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록한다.

■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제6조 관련)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금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기분	책호 번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총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 인										
				계	본세	가산 금	성명	주 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총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역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전월까지 누계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제7조제2항 관련)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00세	00세	00세	00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제8조 관련)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 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 장	지 방 세 환 급 금 정 리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담 당	총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원) (₩)

세 입 항 목	구 분	세 입 연 도	세입과목				환 급 금 총 액	과 오 납 연 월 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 분	세 입 연 도	세입과목				미 납 총 액	총 당 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명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제9조 관련)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처리 결과보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장								
	상호								
연도 기분	세 목	당초 결정		취소(경정)결정		차감액		감액 결정일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붙임 : 조치사항 관계서류 사본 1부.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의결정 처리 결과보고

(심사청구, 이의신청)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연도기분	세목	당초 결정		취소(경정)결정		차감액		감액 결정일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input type="checkbox"/> 조세심판원 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input type="checkbox"/> 법원							
당사자	청 구 인					처분청	
	주 소	법인명 또는 상호			성명		
불복경위	제출 연월일	제출기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				
			청구구분	결정연월일	각하	기각	경정
		1. 조세심판원 2. 법원	1. 이의신청	년 월 일			
			2. 심사청구	년 월 일			
	3. 소송제기		년 월 일				
처분내용	세목	과표	세액	연도(기분)	체납여부	고지연월일	
	처분 사유						
불복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7-578호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존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063-620-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7-579호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1. 개정이유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세의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나.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납기마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안 제9조)

다. 체납정리표 관리, 세입징수 결과 제출, 시세 미수납액 이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안 제13조)

라. 결손처분의 결정, 취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안 제16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063-620-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정액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결정액통지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록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록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정액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록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징수 결과 제출) 시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붙여 다음 달 15일까지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세입마감) 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4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이 시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앞 쪽)

[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시·군				년시·군 세입
	항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목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					
적요	년시·군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제2항 관련)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과장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시·군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담당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군 []

세입연시·군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수납구분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제5조제4항 관련)

징 수 부

회계연도 시·군 : 년 시·군
 결의 연월일 : 년 시·군 월분
 제 목 :
 징 수 세 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시·군 합계															
소계															
〇〇세															
〇〇세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제9조제2항 관련)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비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중)가산횟수	물건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계	

364mm×25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제9조제2항 관련)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 시·군 ○ ○기(월)분

(○ ○ 읍·면·동)

과세 번호	세목	본세	과년 시·군 가산금 총계	증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과세 물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성명(법인명)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10조 관련)

(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여)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시·군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시·군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p style="text-align: center;">주거 확인</p>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재산 확인</p>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생활상태 확인</p>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그 밖의 사항 :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재조사 확인</p>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갑)] (제14조 관련)

(앞 쪽)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 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년 월 일									
체납자	주소				상 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여)			
과세 번호	연 시·군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그 밖의 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갑)]

(뒤 쪽)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제14조 관련)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과세 번호	연시·군/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제17조 관련)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여)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결손처분 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p>「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원 시 장 (인)</p> <p>남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p>						
※ 붙임 : 증명서류 부.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7-580호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2017. 3. 28.시행)됨에 따라 그 조문체계에 맞게 변경된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 (안 제2조)
 - 「지방세법」 제65조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로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의견을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063-620-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 중 “「지방세법」 제65조의”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의”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 4, 5, 6, 7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납세자권리현장 제정) ① 시장은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 권리현장을 제정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 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생략)	제41조(납세자권리현장 제정) ① --- 「지방세기본법」 제76조의 ----- ----- -----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문서번호 :	담 당	납세자 보호관	시 장
수 신 : 세무부서장			
제 목 :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귀 세무부서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소명 요구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예상)과세 처분 또는 세무조사내용

과세처분 세무 조사중지 또는시정요구·소명요구사유

과세처분세무 조사중지 내용 또는시정요구 소명요구 내용

년 월 일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인)

[별지 제3호 서식]

고충민원신청서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
충
내
용

※고충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2.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작성자)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

담 당

납세자보호관

수 신 : 세무부서장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 . .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 .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고
충
내
용

첨부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년 월 일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인)

[별지 제5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관

참 조 :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담 당

세무부서장

아래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의견(직권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
충
내
용의
견
및
처
리
내
용

첨부 : 경정결의서 등 관계증빙서류.

년 월 일

세무부서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6호 서식]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심 의 자 료

	담 당	납세자 보호관	시 장

(접수번호 :)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사업자등록 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충요지

처분내용

주무과
의 견

심 리 판 단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라. 심리의견
※별지작성 가능

첨부서류 : 1.
 2.

[별지 제7호 서식]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의 결 서

(접수번호 :)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 번호		
	성 명		생년월일		
고 충 내 용 (요지)					
의 결 내 용	시정, 일부시정, 시정불가				
의 결 이 유	※ 별지작성 가능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첨부 1. 회의록
2. 심의자료

[별지 제9호 서식]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세무상담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에 이첩하니, 상담내용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제 목			처 리 기 한		
상 담 요 지					

상 담 자 성 명 :

전화번호 :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인)

[별지 제12호 서식]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 수			고충 내용 요약	민 원 인			이첩·이송		처리결과		결 제	
	일자	번호	구분		주 소	성명	생년 월일	일자	타자치 단체 등	일자	내용 (요지)	담당 (주무)	보호관 (과장)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7 - 584호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천면 호경리 일부지역을 자연경계인 원천천을 기준으로 주천면 장안리로 편입함으로써,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 읍·면·동·리간 관할구역에 관한 변경 사항을 본 조례에 일원화 하여 행정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나. 주천면 호경리 일부 지역을 주천면 장안리로 편입함.
(안 제1조제4항, 안 별표 4)
- 다. 기존 행정구역 변경사항(2012. 4. 2 시행)을 본 조례에서 관리하고자 함. (안 제1조제3항, 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행정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word99@korea.kr), 전화(063-620-6064), FAX(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4.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과 장

1. 개정이유

- 주천면 호경리 일부지역을 자연경계인 원천천을 기준으로 주천면 장안리로 편입함으로써,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 읍·면·동·리간 관할구역에 관한 변경 사항을 본 조례에 일원화 하여 행정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나. 주천면 호경리 일부 지역을 주천면 장안리로 편입함.
(안 제1조제4항, 안 별표 4)
- 다. 기존 행정구역 변경사항(2012. 4. 2 시행)을 본 조례에서 관리하고자 함. (안 제1조제3항, 안 별표 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4. . ~ 2017. 4. .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1항 후단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생면 관할구역에 화정동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신정동 관할구역에 주생면 상동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화정동 관할구역에 신정동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

④ 주천면 장안리 관할구역에 주천면 호경리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4와 같다.

제2조 제1항 후단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생면 상동리 관할구역 중 신정동에 편입한 주생면 상동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신정동 관할구역 중 화정동에 편입한 신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하며, 화정동 관할구역 중 주생면 상동리에 편입한 화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

④ 주천면 호경리 관할구역 중 주천면 장안리에 편입한 주천면 호경리 일부지

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4와 같다.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과 제2조제3항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u></p> <p>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도통 동 관할구역에 월락동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u>별표와 같다.</u></p> <p>②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월락</p>	<p><u>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u></p> <p>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 ----- <u>별표1과</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주생면 관할구역에 화정동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신정동 관할구역에 주생면 상동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화정동 관할구역에 신정동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 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3 과 같다.</u></p> <p>④ <u>주천면 장안리 관할구역에 주천면 호경리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 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4 와 같다.</u></p> <p>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p>

동 관할구역중 도통동 관할구역
에 편입한 월락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
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와 같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 . ----

---- 별표 1과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생면 상동리 관할구역 중
신정동에 편입한 주생면 상동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신정동
관할구역 중 화정동에 편입한
신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하며,
화정동 관할구역 중 주생면 상
동리에 편입한 화정동 일부지역
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
표 3과 같다.

④ 주천면 호경리 관할구역 중
주천면 장안리에 편입한 주천면
호경리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4와 같다.

[별표3]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 관련)

□ 남원시 신정동 일부 ⇒ 화정동으로 경계조정 / 2012. 4. 2.

연번	경계조정 전		경계조정 후		지목	면적	비고
	동	지번	동	지번			
합계						11,328	
1	신정동	408-1	화정동	856	대지	548	
2	신정동	408-5	화정동	857	창고	1,757	
3	신정동	408-6	화정동	858	답	271	
4	신정동	408-11	화정동	859	답	530	
5	신정동	408-16	화정동	860	답	210	
6	신정동	409-1	화정동	861	대지	456	
7	신정동	409-3	화정동	862	대지	529	
8	신정동	409-4	화정동	863	답	433	
9	신정동	410	화정동	864	대지	228	
10	신정동	410-1	화정동	865	대지	156	
11	신정동	410-2	화정동	866	대지	90	
12	신정동	410-3	화정동	867	대지	98	
13	신정동	410-4	화정동	868	대지	59	
14	신정동	417-1	화정동	869	답	152	
15	신정동	417-2	화정동	870	답	293	
16	신정동	417-3	화정동	871	전	221	
17	신정동	418-1	화정동	872	대지	381	
18	신정동	418-2	화정동	873	답	1,425	
19	신정동	418-3	화정동	874	전	212	
20	신정동	419-1	화정동	875	답	779	
21	신정동	815-2	화정동	876	도로	269	
22	신정동	817	화정동	877	하천	1,165	
23	신정동	817-1	화정동	878	하천	144	
24	신정동	817-2	화정동	879	하천	269	
25	신정동	817-3	화정동	880	하천	67	
26	신정동	817-4	화정동	881	하천	62	
27	신정동	817-5	화정동	882	하천	80	
28	신정동	818	화정동	883	도로	50	
29	신정동	815-8	화정동	884	도로	394	

□ 남원시 화정동 일부 ⇒ 주생면 상동리로 경계조정 / 2012. 4. 2.

연번	경계조정 전		경계조정 후			지목	면적	비고
	동	지번	면	리	지번			
합계							25,999	
1	화정동	171-2	주생면	상동리	914	도로	456	
2	화정동	171-3	주생면	상동리	915	도로	23	
3	화정동	171-4	주생면	상동리	916	도로	102	
4	화정동	171-5	주생면	상동리	917	답	103	
5	화정동	171-6	주생면	상동리	918	도로	26	
6	화정동	171-8	주생면	상동리	919	하천	49	
7	화정동	172-1	주생면	상동리	920	도로	417	
8	화정동	172-2	주생면	상동리	921	도로	169	
9	화정동	172-3	주생면	상동리	922	답	3,026	
10	화정동	172-4	주생면	상동리	923	하천	55	
11	화정동	173-2	주생면	상동리	924	도로	721	
12	화정동	173-4	주생면	상동리	925	답	1,385	
13	화정동	173-5	주생면	상동리	926	답	926	
14	화정동	173-6	주생면	상동리	927	도로	83	
15	화정동	174	주생면	상동리	928	답	1,607	
16	화정동	175-2	주생면	상동리	929	도로	258	
17	화정동	175-3	주생면	상동리	930	답	1,064	
18	화정동	175-5	주생면	상동리	931	도로	30	
19	화정동	175-7	주생면	상동리	932	답	7	
20	화정동	176	주생면	상동리	933	답	1,091	
21	화정동	177	주생면	상동리	934	답	1,435	
22	화정동	178-2	주생면	상동리	935	도로	430	
23	화정동	178-3	주생면	상동리	936	대지	1,875	
24	화정동	178-4	주생면	상동리	937	도로	7	
25	화정동	178-5	주생면	상동리	938	도로	76	
26	화정동	178-6	주생면	상동리	939	전	1,060	
27	화정동	178-7	주생면	상동리	940	도로	270	
28	화정동	178-8	주생면	상동리	941	전	16	
29	화정동	178-9	주생면	상동리	942	전	84	
30	화정동	179-2	주생면	상동리	943	도로	195	
31	화정동	179-3	주생면	상동리	944	답	726	
32	화정동	179-4	주생면	상동리	945	도로	17	
33	화정동	179-5	주생면	상동리	946	도로	40	
34	화정동	179-6	주생면	상동리	947	대지	37	
35	화정동	179-7	주생면	상동리	948	답	48	
36	화정동	182-2	주생면	상동리	949	도로	63	
37	화정동	182-3	주생면	상동리	950	도로	149	

38	화정동	183-2	주생면	상동리	951	도로	400	
39	화정동	183-3	주생면	상동리	952	도로	33	
40	화정동	752-2	주생면	상동리	953	도로	13	
41	화정동	752-3	주생면	상동리	954	도로	317	
42	화정동	752-4	주생면	상동리	955	도로	13	
43	화정동	752-5	주생면	상동리	956	도로	26	
44	화정동	752-6	주생면	상동리	957	도로	40	
45	화정동	752-7	주생면	상동리	958	도로	129	
46	화정동	752-8	주생면	상동리	959	전	3	
47	화정동	752-9	주생면	상동리	960	전	17	
48	화정동	752-10	주생면	상동리	961	대지	473	
49	화정동	753-1	주생면	상동리	962	잡종지	268	
50	화정동	753-2	주생면	상동리	963	도로	10	
51	화정동	754-2	주생면	상동리	964	도로	440	
52	화정동	754-3	주생면	상동리	965	답	2,969	
53	화정동	754-4	주생면	상동리	966	도로	13	
54	화정동	754-5	주생면	상동리	967	도로	76	
55	화정동	754-6	주생면	상동리	968	답	30	
56	화정동	777	주생면	상동리	969	도로	40	
57	화정동	784	주생면	상동리	970	도로	962	
58	화정동	산 94-7	주생면	상동리	산59	임야	221	
59	화정동	769-11	주생면	상동리	971	구거	727	
60	화정동	770-8	주생면	상동리	972	도로	23	
61	화정동	781-1	주생면	상동리	973	구거	630	

□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일부 ⇒ 신정동으로 경계조정 / 2012. 4. 2.

연번	경계조정 전			경계조정 후		지목	면적	비고
	면	리	지번	동	지번			
합계							72,890	
1	주생면	상동리	1	신정동	822	대지	116	
2	주생면	상동리	1-1	신정동	823	구거	7	
3	주생면	상동리	2-1	신정동	824	전	339	
4	주생면	상동리	2-2	신정동	825	전	79	
5	주생면	상동리	2-3	신정동	826	대지	173	
6	주생면	상동리	2-4	신정동	827	제방	38	
7	주생면	상동리	2-5	신정동	828	제방	159	
8	주생면	상동리	2-6	신정동	829	제방	19	
9	주생면	상동리	2-7	신정동	830	전	41	
10	주생면	상동리	2-8	신정동	831	전	41	
11	주생면	상동리	3-1	신정동	832	전	747	
12	주생면	상동리	3-2	신정동	833	답	225	
13	주생면	상동리	3-4	신정동	834	전	23	
14	주생면	상동리	4	신정동	835	답	1,074	
15	주생면	상동리	5	신정동	836	답	1,210	
16	주생면	상동리	6	신정동	837	답	1,064	
17	주생면	상동리	6-2	신정동	838	답	1,061	
18	주생면	상동리	7	신정동	839	답	4,413	
19	주생면	상동리	8	신정동	840	답	2,688	
20	주생면	상동리	9	신정동	841	답	1,121	
21	주생면	상동리	10	신정동	842	답	1,667	
22	주생면	상동리	11	신정동	843	답	1,233	
23	주생면	상동리	12	신정동	844	답	243	
24	주생면	상동리	14	신정동	845	답	300	
25	주생면	상동리	14-1	신정동	846	답	886	
26	주생면	상동리	15-1	신정동	847	답	2,840	
27	주생면	상동리	15-2	신정동	848	답	1,168	
28	주생면	상동리	15-3	신정동	849	답	1,081	
29	주생면	상동리	16	신정동	850	답	3,071	
30	주생면	상동리	16-2	신정동	851	답	182	
31	주생면	상동리	17	신정동	852	답	588	
32	주생면	상동리	17-2	신정동	853	전	30	
33	주생면	상동리	17-3	신정동	854	제방	248	
34	주생면	상동리	18	신정동	855	답	1,774	
35	주생면	상동리	18-1	신정동	856	제방	467	
36	주생면	상동리	19	신정동	857	답	1,071	
37	주생면	상동리	19-2	신정동	858	답	896	

38	주생면	상동리	20	신정동	859	답	909	
39	주생면	상동리	20-2	신정동	860	답	661	
40	주생면	상동리	20-3	신정동	861	답	1,504	
41	주생면	상동리	21	신정동	862	답	996	
42	주생면	상동리	22	신정동	863	답	787	
43	주생면	상동리	22-3	신정동	864	답	186	
44	주생면	상동리	69	신정동	865	답	53	
45	주생면	상동리	69-2	신정동	866	답	346	
46	주생면	상동리	69-5	신정동	867	답	20	
47	주생면	상동리	70	신정동	868	답	767	
48	주생면	상동리	71	신정동	869	답	1,517	
49	주생면	상동리	71-1	신정동	870	제방	221	
50	주생면	상동리	72-1	신정동	871	답	1,919	
51	주생면	상동리	72-2	신정동	872	대지	64	
52	주생면	상동리	77-1	신정동	873	답	17	
53	주생면	상동리	77-2	신정동	874	도로	145	
54	주생면	상동리	77-3	신정동	875	도로	1,031	
55	주생면	상동리	78-1	신정동	876	답	946	
56	주생면	상동리	78-3	신정동	877	도로	7	
57	주생면	상동리	78-5	신정동	878	제방	916	
58	주생면	상동리	79	신정동	879	제방	60	
59	주생면	상동리	301	신정동	880	답	340	
60	주생면	상동리	301-2	신정동	881	답	119	
61	주생면	상동리	301-3	신정동	882	답	122	
62	주생면	상동리	301-4	신정동	883	답	148	
63	주생면	상동리	302	신정동	884	답	962	
64	주생면	상동리	303	신정동	885	답	3,375	
65	주생면	상동리	304	신정동	886	답	3,736	
66	주생면	상동리	305	신정동	887	답	3,441	
67	주생면	상동리	709	신정동	888	구거	387	
68	주생면	상동리	710	신정동	889	도로	374	
69	주생면	상동리	714-3	신정동	890	구거	223	
70	주생면	상동리	714-4	신정동	891	구거	489	
71	주생면	상동리	716-2	신정동	892	도로	827	
72	주생면	상동리	717	신정동	893	하천	6,701	
73	주생면	상동리	717-1	신정동	894	제방	2,572	
74	주생면	상동리	3-5	신정동	895	구거	2,081	
75	주생면	상동리	712-3	신정동	896	도로	851	
76	주생면	상동리	718-2	신정동	897	도로	687	

[별표4]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제3조제4항, 제4조제4항 관련]

연번	변경전 행정구역				변경후 행정구역				지목	면적(m)	비고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계		196필지		계		196필지		111,175		
1	주천면	호경리	320		주천면	장안리	705		하천	522	
2	주천면	호경리	320	1	주천면	장안리	706		제방	14	
3	주천면	호경리	321		주천면	장안리	700		제방	17	
4	주천면	호경리	321	1	주천면	장안리	701		하천	49	
5	주천면	호경리	322		주천면	장안리	670		하천	529	
6	주천면	호경리	322	1	주천면	장안리	671		제방	28	
7	주천면	호경리	322	2	주천면	장안리	672		제방	8	
8	주천면	호경리	323	1	주천면	장안리	673		답	1,321	
9	주천면	호경리	323	2	주천면	장안리	687		도로	121	
10	주천면	호경리	323	3	주천면	장안리	688		답	115	
11	주천면	호경리	323	4	주천면	장안리	689		제방	167	
12	주천면	호경리	323	5	주천면	장안리	690		하천	152	
13	주천면	호경리	323	6	주천면	장안리	691		제방	40	
14	주천면	호경리	323	7	주천면	장안리	692		하천	103	
15	주천면	호경리	323	8	주천면	장안리	693		제방	160	
16	주천면	호경리	323	9	주천면	장안리	694		하천	297	
17	주천면	호경리	324	1	주천면	장안리	674		답	188	
18	주천면	호경리	324	2	주천면	장안리	686		도로	179	
19	주천면	호경리	324	3	주천면	장안리	695		답	1,227	
20	주천면	호경리	324	4	주천면	장안리	697		답	1,371	
21	주천면	호경리	324	5	주천면	장안리	698		제방	201	
22	주천면	호경리	324	6	주천면	장안리	699		제방	21	
23	주천면	호경리	325	1	주천면	장안리	675		답	628	
24	주천면	호경리	325	2	주천면	장안리	685		도로	284	
25	주천면	호경리	325	3	주천면	장안리	684		답	1,329	
26	주천면	호경리	326		주천면	장안리	683		답	2,410	
27	주천면	호경리	327	1	주천면	장안리	714		답	1,613	
28	주천면	호경리	327	2	주천면	장안리	679		대	707	
29	주천면	호경리	327	3	주천면	장안리	678		도로	202	
30	주천면	호경리	327	4	주천면	장안리	680		대	778	
31	주천면	호경리	327	5	주천면	장안리	682		대	1,245	
32	주천면	호경리	327	6	주천면	장안리	681		답	658	
33	주천면	호경리	328		주천면	장안리	713		답	1,127	
34	주천면	호경리	329		주천면	장안리	707		하천	165	
35	주천면	호경리	329	1	주천면	장안리	708		제방	56	

36	주천면	호경리	330		주천면	장안리	735		전	660	
37	주천면	호경리	330	1	주천면	장안리	709		제방	34	
38	주천면	호경리	330	2	주천면	장안리	733		전	495	
39	주천면	호경리	330	3	주천면	장안리	732		전	660	
40	주천면	호경리	330	4	주천면	장안리	712		전	359	
41	주천면	호경리	331	1	주천면	장안리	710		제방	88	
42	주천면	호경리	333	1	주천면	장안리	711		제방	5	
43	주천면	호경리	334		주천면	장안리	728		답	2,185	
44	주천면	호경리	335		주천면	장안리	729		대	460	
45	주천면	호경리	336	1	주천면	장안리	760		대	477	
46	주천면	호경리	336	2	주천면	장안리	757		도로	17	
47	주천면	호경리	336	3	주천면	장안리	758		도로	65	
48	주천면	호경리	336	4	주천면	장안리	759		대	232	
49	주천면	호경리	337		주천면	장안리	731		대	714	
50	주천면	호경리	338		주천면	장안리	726		답	549	
51	주천면	호경리	339		주천면	장안리	727		답	202	
52	주천면	호경리	340		주천면	장안리	724		답	516	
53	주천면	호경리	341		주천면	장안리	725		대	612	
54	주천면	호경리	342		주천면	장안리	761		대	449	
55	주천면	호경리	342	1	주천면	장안리	762		대	96	
56	주천면	호경리	343	1	주천면	장안리	791		도로	8	
57	주천면	호경리	343	2	주천면	장안리	788		전	30	
58	주천면	호경리	343	3	주천면	장안리	785		도로	324	
59	주천면	호경리	343	4	주천면	장안리	784		전	748	
60	주천면	호경리	343	5	주천면	장안리	787		도로	565	
61	주천면	호경리	343	6	주천면	장안리	786		전	50	
62	주천면	호경리	343	9	주천면	장안리	789		전	10	
63	주천면	호경리	343	10	주천면	장안리	783		도로	49	
64	주천면	호경리	343	11	주천면	장안리	790		도로	137	
65	주천면	호경리	344	1	주천면	장안리	779		임야	171	
66	주천면	호경리	344	2	주천면	장안리	780		임야	30	
67	주천면	호경리	344	3	주천면	장안리	781		도로	113	
68	주천면	호경리	344	4	주천면	장안리	782		임야	20	
69	주천면	호경리	345	1	주천면	장안리	768		잡종지	145	
70	주천면	호경리	345	2	주천면	장안리	763		하천	109	
71	주천면	호경리	345	3	주천면	장안리	771		도로	119	
72	주천면	호경리	345	4	주천면	장안리	774		답	27	
73	주천면	호경리	345	5	주천면	장안리	775		하천	3	
74	주천면	호경리	345	6	주천면	장안리	776		도로	179	
75	주천면	호경리	345	7	주천면	장안리	777		답	327	
76	주천면	호경리	345	8	주천면	장안리	772		도로	195	
77	주천면	호경리	345	9	주천면	장안리	770		잡종지	57	

78	주천면	호경리	345	10	주천면	장안리	769		하천	294	
79	주천면	호경리	345	11	주천면	장안리	773		답	132	
80	주천면	호경리	346		주천면	장안리	778		답	291	
81	주천면	호경리	347		주천면	장안리	803		답	337	
82	주천면	호경리	347	1	주천면	장안리	804		도로	18	
83	주천면	호경리	347	3	주천면	장안리	805		대	337	
84	주천면	호경리	348	1	주천면	장안리	809		답	512	
85	주천면	호경리	348	2	주천면	장안리	814		도로	36	
86	주천면	호경리	348	3	주천면	장안리	813		답	1,673	
87	주천면	호경리	348	4	주천면	장안리	811		대	496	
88	주천면	호경리	349	1	주천면	장안리	819		대	294	
89	주천면	호경리	349	2	주천면	장안리	818		도로	53	
90	주천면	호경리	350	1	주천면	장안리	834		대	221	
91	주천면	호경리	350	2	주천면	장안리	835		도로	13	
92	주천면	호경리	351		주천면	장안리	836		대	486	
93	주천면	호경리	351	1	주천면	장안리	842		전	2,085	
94	주천면	호경리	351	2	주천면	장안리	843		목장용지	915	
95	주천면	호경리	351	3	주천면	장안리	844		목장용지	952	
96	주천면	호경리	351	4	주천면	장안리	845		전	112	
97	주천면	호경리	352	1	주천면	장안리	837		대	360	
98	주천면	호경리	352	2	주천면	장안리	838		도로	36	
99	주천면	호경리	353	1	주천면	장안리	839		대	549	
100	주천면	호경리	353	2	주천면	장안리	840		도로	73	
101	주천면	호경리	354		주천면	장안리	841		대	264	
102	주천면	호경리	355	1	주천면	장안리	812		답	72	
103	주천면	호경리	355	2	주천면	장안리	816		도로	13	
104	주천면	호경리	355	3	주천면	장안리	815		도로	226	
105	주천면	호경리	355	4	주천면	장안리	817		답	102	
106	주천면	호경리	356		주천면	장안리	810		답	79	
107	주천면	호경리	357		주천면	장안리	801		전	1,014	
108	주천면	호경리	357	1	주천면	장안리	802		도로	41	
109	주천면	호경리	358		주천면	장안리	798		전	81	
110	주천면	호경리	358	1	주천면	장안리	799		대	579	
111	주천면	호경리	358	2	주천면	장안리	800		전	504	
112	주천면	호경리	359		주천면	장안리	797		대	611	
113	주천면	호경리	361		주천면	장안리	796		대	370	
114	주천면	호경리	362	1	주천면	장안리	793		도로	73	
115	주천면	호경리	362	2	주천면	장안리	792		도로	56	
116	주천면	호경리	362	3	주천면	장안리	794		도로	271	
117	주천면	호경리	362	4	주천면	장안리	795		전	169	
118	주천면	호경리	363	1	주천면	장안리	751		전	724	
119	주천면	호경리	363	2	주천면	장안리	756		도로	10	

120	주천면	호경리	363	3	주천면	장안리	754		전	83	
121	주천면	호경리	363	4	주천면	장안리	755		도로	3	
122	주천면	호경리	363	5	주천면	장안리	753		도로	12	
123	주천면	호경리	363	6	주천면	장안리	752		전	47	
124	주천면	호경리	364	1	주천면	장안리	743		전	72	
125	주천면	호경리	364	2	주천면	장안리	742		도로	142	
126	주천면	호경리	364	3	주천면	장안리	740		전	56	
127	주천면	호경리	364	4	주천면	장안리	746		도로	360	
128	주천면	호경리	364	5	주천면	장안리	749		전	726	
129	주천면	호경리	364	6	주천면	장안리	745		도로	287	
130	주천면	호경리	364	8	주천면	장안리	747		도로	79	
131	주천면	호경리	364	9	주천면	장안리	744		전	5	
132	주천면	호경리	364	10	주천면	장안리	741		도로	89	
133	주천면	호경리	364	11	주천면	장안리	737		전	4	
134	주천면	호경리	364	12	주천면	장안리	748		전	210	
135	주천면	호경리	365		주천면	장안리	750		대	264	
136	주천면	호경리	443		주천면	장안리	825		답	628	
137	주천면	호경리	444		주천면	장안리	826		대	354	
138	주천면	호경리	445		주천면	장안리	827		대	205	
139	주천면	호경리	446		주천면	장안리	828		대	251	
140	주천면	호경리	447		주천면	장안리	829		대	142	
141	주천면	호경리	448		주천면	장안리	830		대	199	
142	주천면	호경리	448	1	주천면	장안리	831		대	475	
143	주천면	호경리	449		주천면	장안리	833		대	340	
144	주천면	호경리	450		주천면	장안리	832		대	621	
145	주천면	호경리	451	1	주천면	장안리	821		답	1,266	
146	주천면	호경리	451	2	주천면	장안리	820		도로	7	
147	주천면	호경리	451	3	주천면	장안리	822		도로	13	
148	주천면	호경리	452		주천면	장안리	823		답	188	
149	주천면	호경리	453		주천면	장안리	824		답	165	
150	주천면	호경리	454		주천면	장안리	808		임야	317	
151	주천면	호경리	455		주천면	장안리	806		대	330	
152	주천면	호경리	455	1	주천면	장안리	807		답	330	
153	주천면	호경리	456	1	주천면	장안리	764		하천	50	
154	주천면	호경리	456	2	주천면	장안리	767		하천	10	
155	주천면	호경리	456	3	주천면	장안리	765		하천	115	
156	주천면	호경리	456	4	주천면	장안리	766		하천	47	
157	주천면	호경리	457		주천면	장안리	723		답	456	
158	주천면	호경리	458		주천면	장안리	717		하천	292	
159	주천면	호경리	458	1	주천면	장안리	718		하천	73	
160	주천면	호경리	458	2	주천면	장안리	719		하천	111	
161	주천면	호경리	459		주천면	장안리	720		하천	169	

162	주천면	호경리	460		주천면	장안리	721		하천	50
163	주천면	호경리	461		주천면	장안리	667		답	235
164	주천면	호경리	461	1	주천면	장안리	668		제방	157
165	주천면	호경리	461	2	주천면	장안리	669		하천	120
166	주천면	호경리	470		주천면	장안리	715		하천	6,497
167	주천면	호경리	470	2	주천면	장안리	665		제방	284
168	주천면	호경리	470	5	주천면	장안리	704		제방	1,566
169	주천면	호경리	470	6	주천면	장안리	730		하천	357
170	주천면	호경리	470	22	주천면	장안리	738		답	75
171	주천면	호경리	470	35	주천면	장안리	666		하천	3,088
172	주천면	호경리	470	38	주천면	장안리	676		하천	168
173	주천면	호경리	470	39	주천면	장안리	677		하천	484
174	주천면	호경리	470	41	주천면	장안리	716		하천	65
175	주천면	호경리	470	47	주천면	장안리	734		하천	441
176	주천면	호경리	470	48	주천면	장안리	739		하천	211
177	주천면	호경리	470	49	주천면	장안리	736		답	92
178	주천면	호경리	490		주천면	장안리	702		도로	187
179	주천면	호경리	490	1	주천면	장안리	703		제방	277
180	주천면	호경리	490	2	주천면	장안리	696		하천	210
181	주천면	호경리	492		주천면	장안리	722		도로	3,311
182	주천면	호경리	산59		주천면	장안리	산42		임야	10,345
183	주천면	호경리	산59	1	주천면	장안리	산39		임야	68
184	주천면	호경리	산60		주천면	장안리	산44		임야	4,661
185	주천면	호경리	산61		주천면	장안리	산30		임야	1,388
186	주천면	호경리	산62		주천면	장안리	산31		임야	11,937
187	주천면	호경리	산62	1	주천면	장안리	산32		임야	768
188	주천면	호경리	산62	2	주천면	장안리	산38		임야	265
189	주천면	호경리	산62	3	주천면	장안리	산33		임야	1,708
190	주천면	호경리	산63		주천면	장안리	산34		임야	1,388
191	주천면	호경리	산64		주천면	장안리	산35		임야	2,248
192	주천면	호경리	산65	2	주천면	장안리	산36		임야	2,688
193	주천면	호경리	산65	3	주천면	장안리	산37		임야	6
194	주천면	호경리	산65	4	주천면	장안리	산40		임야	158
195	주천면	호경리	산65	5	주천면	장안리	산41		임야	123
196	주천면	호경리	산66		주천면	장안리	산43		구거	99

○ 리간 경계조정 : 주천면 호경리 → 주천면 장안리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공고 제2017-595호

공 고

남원시 화정~대울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남 원 시 장 인

1. 도로구역 결정(안)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 적 (㎡)	기 점	종 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km)
신설	군도	11	수덕~대신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대울리	20,960	사매면 화정리 578도	사매면 대울리 893도	-	1.1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지역간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자 도로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3. 사업시행기간 : 2016년 12월 28일 ~ 2018년 12월 3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 첨”

5. 도로구역 결정(안)도 및 지형도면고지도 : “게재생략”

6.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 4. 17. ~ 2017. 5. 1.(공고일로부터 14일 간)

나. 열람장소 : 남원시청 건설과(☎063-620-6532)

7.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도로구역 결정에 대한 의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안)에 따른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 세부토지조서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M2)	편집면적 (M2)	토지,임야 대 장 소 유 자	
	시	면	리	지 번	지 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남원	사매	화정	567	도	3,374	114		(국)농림축산식품부
2	남원	사매	화정	550	천	23,032	1,010		국(건설교통부)
3	남원	사매	화정	531-7	답	436	436	화정리***	한*희
4	남원	사매	화정	531-5	답	1,058	1,058	화정리***	강*식
5	남원	사매	화정	571	구	1,463	239		(국)농림축산식품부
6	남원	사매	화정	산34-5	임	2,716	2,716	대율리****- *	***씨**종중
7	남원	사매	화정	568	구	1,197	537		(국)농림축산식품부
8	남원	사매	화정	산107	구	99	20		(국)건설부
9	남원	사매	화정	528-8	답	3	3	화정리 ***-*	이*춘
10	남원	사매	화정	528-9	답	178	178	대전시서구 관저동***	한*호
11	남원	사매	화정	528-10	답	376	376	동충동 ***-*	박*남
12	남원	사매	화정	528-11	답	246	246	월평리 ***	강*열
13	남원	사매	화정	495	도	407	381		국(건설부)

14	남원	사매	화정	112-23	전	3	3	화정리 ****	한*우외10인
15	남원	사매	화정	112-27	대	8	8	화정리 ****	한*우외10인
16	남원	사매	화정	112-31	전	225	225	화정리 ***	한*석외3인
17	남원	사매	화정	112-29	전	554	554	화정리/이천 시 마장면 덕평리 ***-*	최*래/최*수
18	남원	사매	화정	112-25	전	3	3	화정리 ****	한*우외10인
19	남원	사매	화정	산108	도	496	26		(국)건설부
20	남원	사매	화정	112-26	전	160	160	화정리****	한*외외10인
21	남원	사매	화정	산30-4	임	14	14	화정리 ***	***씨**공파 하*종중
22	남원	사매	대울	684-1	전	40	40	화정리 ***	한*외외10인
23	남원	사매	대울	산135-3	임	920	920	화정리 ***	***씨태**파 하수종중
24	남원	사매	대울	781-31	구	1,533	194		(국)건설부
25	남원	사매	대울	906	도	2,600	534		(국)농림축산식품부
26	남원	사매	화정	578	도	2,372	5		(국)농림축산식품부
27	남원	사매	화정	531-4	답	263	56		남원시
28	남원	사매	화정	531-8	답	151	151	화정리 ***	한*열

29	남원	사매	화정	572	도	2,877	5		(국)농림축산식품부
30	남원	사매	화정	119-1	전	178	178	송천동2가28 5 현대3차아파 트***-****	강*춘
31	남원	사매	화정	산32-3	임	118	118	대울리 ***	**이씨**종중
32	남원	사매	화정	112-24	전	211	211	대울리 ***	**이씨**종중
33	남원	사매	화정	112-19	전	36	30	화정리 ***	한*석외3인
34	남원	사매	화정	112-30	대	19	19	화정리 ***	한*석외3인
35	남원	사매	화정	산31-4	임	79	79	화정리***	한*석외3인
36	남원	사매	화정	산31-1	임	893	380	화정리 ***	한*석외3인
37	남원	사매	화정	112-28	전	90	90	화정리 ***	한*석외3인
38	남원	사매	대울	684-4	전	519	1	화정리 ***	한*석외3인
39	남원	사매	대울	산136-3	임	144	144	화정리 ***	청주한씨종수공종중
40	남원	사매	대울	802	도	102	6		(국)건설부
41	남원	사매	대울	690	잡	1,210	1	화정리 ***	임*만
42	남원	사매	대울	781-33	구	1,197	1		(국)건설부
43	남원	사매	대울	905	구	1,707	510		(국)농림축산식품부

44	남원	사매	대울	842-13	답	18	18	부천원미구 중동신도시* ***	강*식
45	남원	사매	대울	842-12	답	60	60	화정리 ***	강*식
46	남원	사매	대울	842-11	답	110	110	화정리 ***	강*식
47	남원	사매	대울	904	도	3,005	135		(국)농림축산식품부
48	남원	사매	대울	801-1	도	76	3		(국)건설부
49	남원	사매	대울	893	도	3,359	1,790		(국)농림축산식품부
50	남원	사매	대울	840-17	답	603	603	경기도이천 시마장면덕 평리****	최*수
51	남원	사매	대울	900	구	7,533	807		(국)농림축산식품부
52	남원	사매	대울	899	도	4,347	82		(국)농림축산식품부
53	남원	사매	대울	895	구	4,319	2,491		(국)농림축산식품부
54	남원	사매	대울	839-11	답	492	492	화정리 ***	이*우
55	남원	사매	대울	894	도	3,324	127		(국)농림축산식품부
56	남원	사매	대울	838-7	답	667	667	보절면 사촌리***	김*순외3인
57	남원	사매	대울	643-3	잡	40	40	산내면 천왕봉로***	소*을
58	남원	사매	대울	799-6	잡	17	17	산내면 천왕봉로 ***	소*을
59	남원	사매	대울	642-19	임			산내면	소*을

						106	106	천왕봉로 ***	
60	남원	사매	대울	642-20	대	12	12	산내면 천왕봉로 ***	소*울
61	남원	사매	대울	642-18	대	87	87	대울리***- *	이*덕
62	남원	사매	대울	838-8	답	33	33	전주시완산 구삼천동1가 ***	형*우
63	남원	사매	대울	642-17	임	108	108	전주시완산 구삼천동1가 ***	형*우
64	남원	사매	대울	837-6	답	1,112	1,112	전주시완산 구삼천동1가 ***	형*우
65	남원	사매	대울	837-7	답	76	76	대산면금성 리***	***씨***당 공파종중
66	남원	사매	대울	837-4	대	397	1		남원시
67	남원	사매	대울	445-5	도	367	3	화정리 ***	조*필
합계							20,960		

남원시 공고 제2017 - 600호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인 리의 관할구역을 분명히 규정하여 행정의 기초를 마련하고 향후 변경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나.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비하고(2012. 4. 2, 관할구역 변경사항 삭제) 리 명칭과 관할구역을 신설 (안 제2조, 안 별표 1,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행정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word99@korea.kr), 전화(063-620-6064), FAX(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4.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과 장

1. 개정이유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인 리의 관할구역을 분명히 규정하여 행정의 기초를 마련하고 향후 변경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나.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비하고(2012. 4. 2, 관할구역 변경사항 삭제) 리 명칭과 관할구역을 신설 (안 제2조, 안 별표 1, 안 별표 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4. . ~ 2017. 4. .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구역은 별표와”를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을”을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남원시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② 남원시 운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리·통·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와 별표3을 각각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u>남원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명칭 및 구역) 남원시 읍·면·동의 <u>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u></p> <p><u><신 설></u></p> <p>제3조(명칭과 구역의 변경) 읍·면·동의 명칭 및 <u>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로서 이를 정한다.</u></p>	<p><u>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u>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u> -----.</p> <p>제2조(명칭 및 구역) ① ----- ----- <u>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u></p> <p>② <u>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u></p> <p>제3조(명칭과 구역의 변경) 읍·면·동·리의 명칭과 <u>구역을 -----</u> -----.</p>

[별표1]

남원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제1항 관련)

읍·면·동 명칭	관할구역
운봉읍	주촌, 덕산, 공안, 행정, 산덕, 동천, 북천, 서천, 용산, 준향, 장교, 권포, 임, 매요, 가산, 화수, 신기리 일원
주천면	주천, 배덕, 송치, 용담, 호기, 장안, 은송, 호경, 용궁, 고기, 덕치리 일원
수지면	남창, 초리, 산정, 유암, 호곡, 고평리 일원
송동면	신평, 송내, 사촌, 송상, 장국, 흑송, 송기, 장포, 영동, 연산, 양평, 두신, 세전리 일원
주생면	상동, 중동, 지당, 영천, 정송, 제천, 낙동, 내동, 도산리 일원
금지면	용정, 입암, 서매, 방촌, 택내, 창산, 상신, 신월, 상귀, 귀석, 하도리 일원
대강면	풍산, 수홍, 옥택, 평촌, 입암, 송대, 강석, 사석, 방동, 월탄, 생암, 신덕, 방산리 일원
대산면	금성, 수덕, 대곡, 풍촌, 신계, 운교, 옥율, 길곡리 일원
사매면	서도, 계수, 인화, 화정, 대울, 월평, 오신, 관풍, 대신리 일원
덕과면	만도, 신양, 사율, 고정, 덕촌, 용산리 일원
보절면	서치, 괴양, 진기, 금다, 신과, 황벌, 도룡, 사촌, 성시리 일원
산동면	목동, 식련, 부절, 태평, 대기, 월석, 대상리 일원
이백면	초촌, 척문, 서곡, 내동, 남계, 강기, 양가, 평촌, 과립, 효기리 일원
인월면	중군, 인월, 서무, 취암, 건지, 유곡, 상우, 성산, 자래리 일원
아영면	아곡, 봉대, 인풍, 갈계, 청계, 월산, 성, 구상, 일대, 의지, 두락리 일원
산내면	중황, 백일, 대정, 장항, 입석, 내령, 부운, 덕동리 일원
동충동	동충동 일원
죽향동	죽향동 일원
하정동	하정동 일원
쌍교동	쌍교동 일원
천거동	천거동 일원
노암동	노암동 일원
신촌동	신촌동 일원
어현동	함파, 세현, 어은골, 독도랑골 일원
금동	금동 일원
조산동	서조산, 신조산, 동조산 일원

왕정동	왕정동 일원
신정동	새터, 아래정재, 윗정재 일원
화정동	화산당, 매골, 대정동, 시목동 일원
향교동	향교동 일원
용정동	구룡, 용갈, 신생, 박달 일원
광치동	광석, 읍치 일원
내척동	내동, 미동, 보성, 재실 일원
산곡동	응곡, 산성, 칠지, 산곡 일원
도통동	도통동 일원
월락동	월미, 낙현 일원
고죽동	황죽, 고산 일원
식정동	식정, 요천 일원
갈치동	상갈치, 중갈치, 하갈치 일원

[별표2]

남원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제2항 관련)

읍·면별	리 명칭	관할구역	
운봉읍	주촌리	주촌	
	덕산리	덕산, 가장	
	공안리	수철, 공안, 유평, 용은	
	행정리	행정, 엄계	
	산덕리	산덕, 삼산	
	동천리	동상, 동하	
	용산리	용산	
	북천리	북천	
	서천리	서상, 서남, 서하	
	준향리	준향	
	장교리	장교, 장동, 연동	
	권포리	권포, 가동	
	임리	임	
	신기리	신기	
	매요리	매요	
	가산리	가산, 방현	
	화수리	소석, 전촌, 비전, 화신	
	주천면	주천리	하주, 상주
		배덕리	배촌, 덕촌
송치리		웅치, 중송, 하송	
용담리		용담	
호기리		호곡, 신기, 안곡	
장안리		무수, 외평	
은송리		행정, 내송	
호경리		호경	
용궁리		외용궁, 내용궁	
고기리		내기, 고촌, 회덕, 노치	
수지면	남창리	남창, 용강, 신평	
	초리	초리, 서당	
	산정리	등동, 가정, 마연, 산촌	
	유암리	유촌, 포암, 갈촌	
	호곡리	외호곡, 내호곡, 신덕	
	고평리	양촌, 고정, 진곡, 마륜	
송동면	신평리	신기, 백평	
	송내리	송내	
	사촌리	내사촌, 외사촌	
	송상리	문치, 오촌, 원촌, 생촌	
	장국리	부석, 태동, 동서내	
	흑송리	안계, 척동	
	송기리	우동, 부동	

	장포리	장포	
	영동리	영촌, 손동	
	연산리	연산	
	양평리	양평	
	두신리	두곡, 신촌	
	세전리	동양, 중상, 신산	
주생면	상동리	상동, 부동	
	중동리	중동	
	지당리	대지, 소지, 효동	
	정송리	정충, 반송	
	영천리	영촌, 유매	
	제천리	제천, 서만	
	낙동리	낙동	
	내동리	내동, 광촌	
	도산리	상도, 도산	
	금지면	옹정리	금지, 석정
입암리		입동, 입서	
서매리		서재, 매촌	
방촌리		방촌	
택내리		택촌, 내기	
창산리		호산, 대성	
상신리		상신	
신월리		장승, 금평, 황구	
상귀리		상귀	
귀석리		귀석	
하도리		용전, 하도	
대강면		풍산리	산촌, 곡촌, 양촌
		수흥리	수촌, 도곡
	옥택리	옥전, 택촌	
	평촌리	평촌	
	입암리	입암	
	송대리	송내, 대치	
	강석리	강석	
	사석리	사촌1, 사촌2, 석촌	
	방동리	편동, 양동	
	월탄리	월산, 금탄	
	생암리	광암, 생사	
	신덕리	신기, 가덕	
	방산리	방산	
	대산면	금성리	금강, 감성
수덕리		노촌, 노산	
대곡리		하대, 상대	
풍촌리		감동, 독산	
신계리		신촌, 월계	

	운교리	운교
	옥율리	옥전, 율정
	길곡리	왓길, 심곡
사매면	서도리	노봉, 수촌, 서촌
	계수리	수동, 계동
	인화리	인화
	화정리	화정
	대율리	대율
	월평리	수월, 손율, 덕평
	오신리	하신, 중신, 신촌, 오현
	관풍리	풍촌, 관촌, 세동
	대신리	상신, 대산
	덕과면	만도리
신양리		비촌, 양선, 작소
사율리		사곡, 율천
고정리		고정, 신정, 월평
덕촌리		덕동, 수촌
용산리		용산, 추산, 배산
보절면	서치리	부흥, 서당
	괴양리	개신, 양촌, 음촌
	진기리	진목, 내동, 신기
	금다리	금계, 다산
	신파리	하신, 상신, 파동, 중신
	황벌리	은천, 벌촌, 외황, 내황
	도룡리	도촌, 용평, 안평
	사촌리	사촌
	성시리	성남, 성북, 계월
산동면	목동리	목동
	식련리	식련
	부절리	부동, 부서, 중절
	태평리	이곡, 태평, 신평
	대기리	대촌, 등구, 평선
	월석리	월산, 석동
	대상리	대상, 상신
이백면	초촌리	오촌, 초동
	척문리	척동, 폐문
	서곡리	서동, 채곡, 문화
	내동리	내동, 외동
	남계리	계산, 남평, 산남
	강기리	내기, 강촌
	양가리	양강, 목가
	평촌리	평촌
	과립리	과리, 입촌
	효기리	효기, 효촌

인월면	중군리	중군
	인월리	구인월, 인월, 신인월, 월평
	서무리	서무, 계암, 사창, 동현, 신촌
	취암리	취암, 동무, 덕실
	건지리	외건, 내건, 지산
	유곡리	유곡, 도장, 성내
	상우리	상우, 하우
	성산리	성산, 용주, 장평
	자래리	자래, 연실
아영면	아곡리	아곡, 당동
	봉대리	봉대
	인풍리	외인, 내인, 매산
	갈계리	서갈, 동갈
	청계리	광평, 외지, 청계, 고인
	월산리	구지, 신지, 오산
	성리	상성, 하성
	구상리	구상, 송리
	일대리	부동, 일대
	의지리	서정, 읍동, 의지
	두락리	두락, 이동
산내면	중항리	상항, 중항, 하항
	백일리	백일, 원백일
	대정리	중기, 대정, 매동
	장항리	장항, 원천
	입석리	입석, 삼화
	내령리	내령
	부운리	부운, 와운, 반선
	덕동리	덕동, 달궁

※ 관할구역 란의 명칭은 행정리를 말함.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공고 제2017 - 604호

공 고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남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되고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이 통보됨에 따라 공통 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 조문 체계 정비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 다. 문화재 및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안 제5조)
- 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6조)
- 마.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기업도시 및 창업기업,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함 (안 제7조 ~ 안 제9조)

- 바.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안 제10조)
 사.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안 제15조)

3.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4.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4. 11. ~ 2017. 5. 1. (20일간)

6. 의견제출

남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 (재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남원시 재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675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 E-Mail : 71hyun@korea.kr
- 전 화 : 063-620-6298
- F A X : 063-620-6710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17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남원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지정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 을 7년” 으로 하고, “2년” 을 “3년” 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 을 “5년” 으로 하고, “2년” 을 “3년” 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4조에 따라 이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제9조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와 관련한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원시공고 제2017-611호

공인 등록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남 원 시 장

□ 전자이미지공인 신조 등록 [민원과]

1. 공인 등록사유 : 바른땅시스템(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우편물 발송에 따른 ‘남원시장’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2. 공인 등록일 : 2017. 4. 14.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7조의2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 (cm)	형태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원시 장 인	3.0cm×3.0cm 정방형	전 자 이미지		민원과

남원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4월 14일

남원시 예규 제 19 호

남원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남원시의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시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되는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를 통하여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인가·허가, 검사, 승인, 등록 등에 관련한 업무
 - 나. 계약관련 업무
 - 다. 그 밖에 세입·세출관리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

여야 한다.

1. 2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금액)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 다시 금품·향응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고발을 하는 때에는 시장의 명의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 범죄행위 묵인에 대한 책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보고 또는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

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생년월일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고 발 처 리 상 황 부

일련 번호	피 고 발자 인적사항				범죄혐의사실요지	고발 기관	고발 일자	수사 기관	검 찰 청		법 원	
	범죄혐의 당시소속	고발당시 소 속	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일 자	처분내용	판 결 일 자	판결내용